

의안번호	제 593 호
의 결 연 월 일	2017년 4월 일 (제355회)

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 의 자	이숙애 의원 등 7 인
발의연월일	2017년 4월 11일

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이숙애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593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7년 4월 11일

발 의 자 : 이숙애, 정영수, 이종욱,
윤홍창, 임현경, 최광옥,
김영주

1. 개정이유

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(대통령령)」 제7조의3 제1항에 근거하여 동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음에 따라 학교의 재량휴업일 등을 활용한 공무원의 학습 휴가제를 신설하며, 3일장 중심의 장례문화에 맞게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유치원,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은 학교의 재량휴업일, 개교기념일 등을 이용하여 연 3일 이내에서 학습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신설함.(안 제19조 9항)

나. 지방공무원 경조사 특별휴가일수 중, 조부모, 외조부모

사망 시 2일을 3일로,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시 2일을 3일로 변경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하고,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 1일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.(안 별표 5)

3. 참고사항

가. 신·구조문 대비표: 붙임

나. 관계 법령: 「지방공무원법」,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

다.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관계부서 협의 : 협의완료(충청북도교육청 총무과)

마. 기 타

1) 입법예고 : 충청북도의회 공고 제2017-17호

○입법예고 의견접수: 107명

○입법예고 주요의견: (별첨자료 1)

○입법예고 의견 처리결과: (별첨자료 2)

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 사무 없음

3) 부패영향평가: 해당 없음

4) 성별영향분석평가: 해당 없음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⑨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유치원,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은 학교의 재량휴업일, 개교기념일 등을 이용하여 연 3일 이내에서 학습 휴가를 받을 수 있다.

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5]

경조사별 휴가일수표(제18조제1항 관련)

구 분	대 상	일 수
결 혼	본인	5
	자녀	1
출 산	배우자	5
입 양	본인	20
사 망	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	5
	본인 및 배우자의 조모·외조부모	3
	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	3
	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	1
	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	1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제19조(특별휴가) ① ~ ⑧ (생략)</p> <p><신 설></p> <p>[별표 5] 경조사별 휴가일수표(제19조제1항 관련)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대 상</th> <th>일수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2">결혼</td> <td>본인</td> <td>5</td> </tr> <tr> <td>자녀</td> <td>1</td> </tr> <tr> <td>출산</td> <td>배우자</td> <td>5</td> </tr> <tr> <td>입양</td> <td>본인</td> <td>20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4">사망</td> <td>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</td> <td>5</td> </tr> <tr> <td>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·외조부모</td> <td>2</td> </tr> <tr> <td>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</td> <td>2</td> </tr> <tr> <td>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</td> <td>1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대 상	일수	결혼	본인	5	자녀	1	출산	배우자	5	입양	본인	20	사망	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	5	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·외조부모	2	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	2	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	1	<p>제19조(특별휴가) ① ~ ⑧ (현행과 같음)</p> <p>⑨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유치원,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은 학교의 재량휴업일, 개교기념일 등을 이용하여 연 3일 이내에서 학습 휴가를 받을 수 있다.</p> <p>[별표 5] 경조사별 휴가일수표(제19조제1항 관련)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대 상</th> <th>일수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2">결혼</td> <td>본인</td> <td>5</td> </tr> <tr> <td>자녀</td> <td>1</td> </tr> <tr> <td>출산</td> <td>배우자</td> <td>5</td> </tr> <tr> <td>입양</td> <td>본인</td> <td>20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5">사망</td> <td>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</td> <td>5</td> </tr> <tr> <td>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·외조부모</td> <td>3</td> </tr> <tr> <td>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</td> <td>3</td> </tr> <tr> <td>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<u>그 형제자매의 배우자</u></td> <td>1</td> </tr> <tr> <td><u>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</u></td> <td>1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대 상	일수	결혼	본인	5	자녀	1	출산	배우자	5	입양	본인	20	사망	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	5	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·외조부모	3	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	3	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<u>그 형제자매의 배우자</u>	1	<u>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</u>	1
구분	대 상	일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결혼	본인	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자녀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출산	배우자	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입양	본인	2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사망	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	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·외조부모	2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	2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분	대 상	일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결혼	본인	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자녀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출산	배우자	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입양	본인	2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사망	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	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·외조부모	3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	3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<u>그 형제자매의 배우자</u>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<u>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</u>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관련 법규 발췌

□ 지방공무원법

제59조(위임규정)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□ 지방공무원 복무규정

제7조의3(특별휴가)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다만,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②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. <개정 2013.12.11.>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(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)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,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(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)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(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)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6.30.>

1.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(「모자보건법」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.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)·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

2.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

3.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·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

④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. <개정 2014.6.30.>

1.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(이하 "임신기간"이라 한다)이 11주 이내인 경우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

2.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

3.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

4.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

5.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

⑤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. 다만,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.

⑥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. <신설 2013.5.31.>

[전문개정 2010.7.15.]

【별첨자료 1】

입법예고 접수 의견

(전국공무원노조 충북교육지부 소속 교직원:107명)

원안	개정안	입법예고 의견
19조(특별휴가) ⑥ <u>초등학교</u> 상당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자녀 학교(관계법령에 의거 인가된 학습시설)행사에 참석할 경우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.		<u>고등학교</u> 상당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자녀 학교(관계법령에 의거 인가된 학습시설)행사에 참석할 경우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.
제19조(특별휴가) <신설>	⑨ <u>각급 학교 근무 지방공무원</u> 은 <u>학교의 재량휴업일, 개교기념일 등을 이용하여 연 5일 이내에서 학습 휴가를 받을 수 있다.</u>	⑨ <u>각급학교(유치원 포함)</u> 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은 학교의 재량휴업일, 개교기념일등을 이용하여 연 <u>5일</u> 의 학습휴가를 얻을 수 있다.

【별첨자료 2】

입법예고 접수 의견 처리 결과

원안	개정안	입법예고 의견	최종 수정안
<p>19 조 (특 별 휴 가) ⑥ <u>초등학교</u> 상당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자녀 학교(관계법령에 의거 인가된 학습시설)행사에 참석할 경우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.</p>		<p>19 조 (특 별 휴 가) ⑥<u>고등학교</u> 상당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자녀 학교(관계법령에 의거 인가된 학습시설)행사에 참석할 경우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.</p>	<p>현재 행정자치부에서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제7조의 3(특별휴가) 조항에 “소속기관의 장은 자녀를 둔 소속 공무원이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어린이집,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,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<u>연간 2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부여하되, 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 1일을 가산할 수 있다</u>”는 내용의 ⑥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이 입법예고 및 법제심의를 마치고 추진 중에 있어 이와 관련된 조례 개정은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개정 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</p>

원안	개정안	수정안	최종수정안
<p>제19조(특별휴가)</p> <p><신설></p>	<p>제19조(특별휴가) ..</p> <p>.....</p> <p>⑨각급 학교 근무 지방공무원은 학교의 재량휴업일, 개교기념일 등을 이용하여 연 5일 이내에 학습휴가를 받을 수 있다.</p>	<p>제19조(특별휴가) ...</p> <p>.....</p> <p>⑨각급학교(유치원 포함)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은 학교의 재량휴업일, 개교기념일등을 이용하여 연 5일의 학습휴가를 얻을 수 있다.</p>	<p>제19조(특별휴가)</p> <p>.....</p> <p>⑨ ‘각급학교’를 ‘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,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의 학교’로 수정하여 표기하고, 타·시도 형평성을 고려하여 ‘연 5일’을 ‘연 3일’로 함.</p>